



전기용품 안전기준, 국내환경 맞도록 대폭 정비

국제표준 위주 안전기준 한국형 안전기준으로 정비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金惠琬)은 냉·온수기, 발욕조 등 화재·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내년까지 전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은 대부분 IEC 국제표준을 그대로 적용해오며 따라,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사용습관·문화 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안전사고방지가 미흡하는 등의 안전사고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 전기압력솔은 일치하는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품목의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폭발방지 등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별도의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적용중

*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우리나라에서만 주로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제규격이 없어, 국내환경에 맞게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안전기준의 정비는, 국제표준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해당 국제규격이 없어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품은 품목마다의 고유특성

을 고려하여 별도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두가지 이상의 부품이 결합되거나 여러가지의 기능제품은 안전기준보완 및 세부 안전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06.7월말까지 정밀검토하고,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품목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07년까지 현행 안전기준을 전부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표준원은 금번 안전기준의 정비로, 최근 새로이 출시되고 있는 웰빙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되고, 기존 제품의 안전기준 세부적용범위도 명확하게 됨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 문의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02-509-7235) 배승진 과장, 윤기환 연구관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 개요

○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제조·판매 할 수 있도록 한 인증제도이며, 세계각국도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안전인증제도를 운영하고있음

- 근거법령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974년 제정)

*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용품을 제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대상 : 247개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전기기기류 132 품목

- 전기톱, 드라이버 등 전동공구 17품목

- TV, 오디오 등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26품목

- 모니터, 복사기 등 정보·사무기기 9품목

- 형광등기구, 램프 등 조명기기 18품목

- 전선, 스위치 등 전선 및 전기부품 45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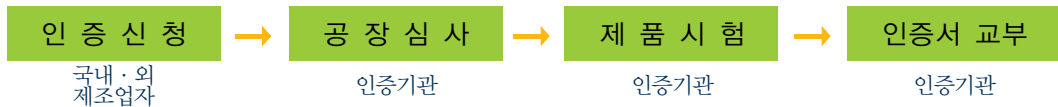
○ 안전인증기관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군포)

- 산업기술시험원(서울 구로)

- 한국전자파연구원(경기 용인)

□ 안전인증 처리절차 및 인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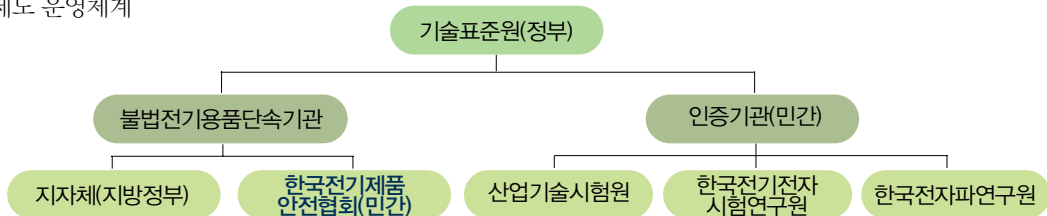
○ 인증방법(신청서류 : 제품설명서, 전기회로도, 부품명세표)

- 공장심사 : 제조·검사설비 및 기술능력 확인

- 제품시험 : 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평가

* 안전인증 처리기간 : 45일 이내

□ 제도 운영체계



□ 사후관리

○ 정기검사 : 연1회 이상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안전인증기관)

○ 시판품 조사 :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구입하여 시험(정부)

○ 불법전기용품조사 : 시·도지사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시중 유통제품, 인터넷 쇼핑몰, 세관 통관자료에 의한 조사